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 7. 6.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6. 23.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6. 30
- 다. 상정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7. 6)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기)

## 가. 제출이유

-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우리구 종전의 조례 중 특별휴가 및 병가 등에 관한 불확실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행정에 적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9조)
-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를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호)
-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배속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 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배속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 전재)

- 동 조례안은 1994. 5. 16. 대통령령 제1462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 복무 규정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동과 1994. 5. 30. 서울특별시장 혼령 제796호에 근거한 개정으로,
-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휴가제도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개정이라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문(이봉형 위원) : 구소속 공무원이 해외파견 근무를 한적이 있는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 질문(김문태 위원) : 승진·전직 시험응

시 공무원의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인가?

-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대부분 시험은 일요일날 시행하나 평일일 경우 그 시행 당일에 한하여 공가처리 됩니다.

5. 토론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 개정조례(안)

의 안	308
번호	

제출년월일: 1994. 6. 23.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우리구 종전의 조례 중 특별 휴가 및 병가 등에 관한 불확실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행정에 적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

지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9조)

나.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호)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배속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배속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 3. 개정근거

공무원 복무규정(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2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호, 제23조, 별표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국외여행규정(1994. 5. 30. 시장훈령 제796호)

##### 4. 개정조례(안):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의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본문중 “연누계 2월”을 “연누계 60일”로, 단서 중 “6월”은 “180일”로 각각 한다.

제23조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이 산설한다.

####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9조중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를 삭제한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되며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파견근무) ①~②(생략) <u>〈신설〉</u>	제9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 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수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표(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u>경조사별휴가일수표</u>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녀	1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녀	3
	형제자매	3
	배속부모	3
탈 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형제자매	1